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25
----------	-----

2021. 1. 28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1일

－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－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」는 2001년 전부개정 된 이후, 2006년
과 2011년에 일부개정되었으나, 현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
있음.
-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상임위원, 위원 해촉, 간사 구성
등의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충청북도지 편찬을 도모하려는
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)
 - 기획관리실장→ 위원 중에 호선
- 도지편찬 관련 위원회의 역할(편찬수행→ 편찬사항 심의) 변경(안 제3조)
- 상임위원 선정 사항 변경(안 제5조)
- 위원 해촉 사항 변경(안 제7조)
-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에 일부개정 이후 현재 업무추진 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,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상임위원, 위원 해촉, 간사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충청북도지 편찬을 도모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원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,
 - 안 제9조에서는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 하였으며,
 - 그밖에 안 제3조, 제5조, 제7조 등에서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용어를 정비하였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서에서 도지편찬 업무추진 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62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」는 2001년 전부개정된 이후, 2006년과 2011년에 일부개정되었으나, 현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
-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상임위원, 위원 해촉, 간사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충청북도지 편찬을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부위원장(기획관리실장→ 위원 중에 호선) 변경(안 제2조)
- 도지편찬 관련 위원회의 역할(편찬수행→ 편찬사항 심의) 변경(안 제3조)
- 상임위원 선정 사항 변경(안 제5조)
- 위원 해촉 사항 변경(안 제7조)
-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임무를 수행한다”를 “사항을 심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향토문화”를 “충북문화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인을 둔다”를 “1명을 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망 또는 타시·도 관내로 퇴거한”을 “사망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잘병”을 “질병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소위원회)”를 “(분과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지편찬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위원회”를 각각 “분과위원회”로, “위원회의 정수”를 “위원의 정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각1인”을 “각각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업무담당 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</u>과 부위원장 <u>1인</u>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<u>1명</u>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도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<u>임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도지발간을 통한 도정홍보 및 <u>향토문화의 계승발전</u></p> <p>3 ~ 4 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 <u>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충북문화</u> -----</p> <p>3 ~ 4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상임위원) ① 도지의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정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<u>1인</u>을 둔다.</p> <p>②~③ 생략</p>	<p>제5조(상임위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명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연구관 및 연구원) ①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,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상임 위원 밑에 연구관 <u>1인</u>과 연구원 <u>1인</u>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생략</p>	<p>제6조(연구관 및 연구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<u>1명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위원이 임기중 <u>사망 또는 타시·도 관내로 퇴거한 때</u></p> <p>2.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<u>질병</u> 또는 6월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② 생략</p>	<p>제7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 ----- <u>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사망한</u> ----- --</p> <p>2. ----- <u>질병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<u>소위원회</u>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도지편찬소위원회(이하“소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<u>소위원회</u>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, <u>소위원회</u>의 명칭과 <u>위원회의 정수</u> 및 기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<u>분과위원회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분과위원회</u> ----- -----</p> <p>② <u>분과위원회</u> ----- ----- <u>분과위원회</u> ----- - <u>위원의 정수</u> ----- -----</p>
<p>제10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<u>각1인</u>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<u>문화예술과장</u>이 되고 서기는 <u>업무담당사무관</u>이 된다.</p>	<p>제10조(간사와 서기) ① ----- ----- ----- <u>각각 1명</u> -----</p> <p>② ----- <u>업무담당 과장</u> ----- ----- <u>업무담당 사무관</u> -----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